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도경옥, 구갑우, 이혜정, 이희옥, 정욱식

김상기(金常基)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아이오와대 정치학박사

도경옥(都京玉)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구갑우(具甲祐)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혜정(李惠正)

중앙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희옥(李熙玉)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정옥식(鄭旭湜)

평화네트워크 대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군사안보 전공)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연구책임자 : 김상기(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도경옥(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혜정(중앙대학교 교수)

이희옥(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KINU 정책연구시리즈 19-01

발 행 일 2019년 4월 25일

저 자 김상기, 도경옥, 구갑우, 이혜정, 이희옥, 정육식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평화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 페 이 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인쇄처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I S B N 978-89-8479-961-5 9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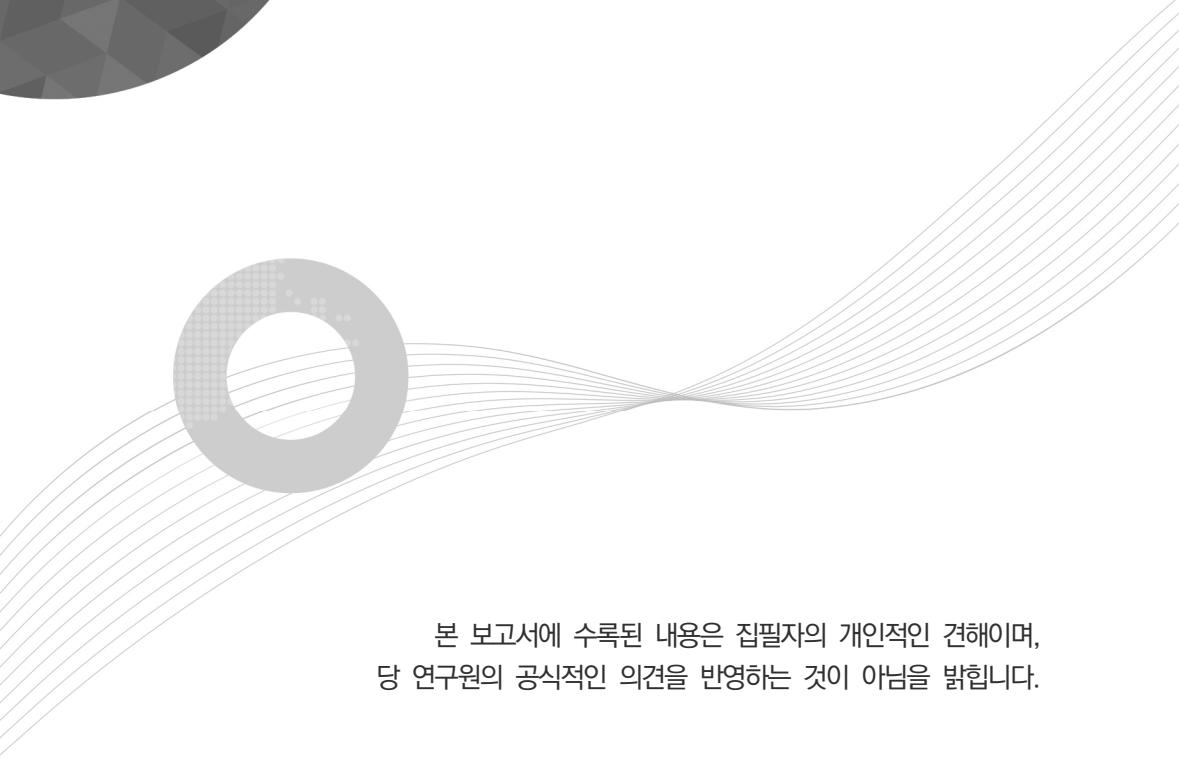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7
II.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15
제1조. 전쟁의 종식	17
제2조. 경계 및 평화지대	18
제3조. 불가침 및 안전보장	18
제4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19
제5조. 군비통제	20
제6조. 한반도 평화관리 기구	21
제7조. 양자관계 발전	21
제8조.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	22
제9조. 발효	23
III. 해설	25
1. 평화협정 시안의 구조와 주요 내용, 특징	27
2. 전문(前文)과 각 조항 해설	33
부록: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의 영문본	61
참고문헌	71
최근 발간자료 안내	73

● ● ● 요 약 ● ●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제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정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안은 남·북·미·중 4자 간의 포괄적 협정 방식을 택하며, 전문(前文)과 9개조로 구성된다. 우선 전문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목적, 역사적 의미, 기본 정신 등에 대해 밝힌다. 이어지는 9개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전쟁의 종식; 2) 경계 및 평화지대; 3) 불가침 및 안전보장; 4)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5) 군비통제; 6) 한반도 평화관리 기구; 7) 양자관계 발전; 8)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 9) 발효. 이 보고서는 평화협정 시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함께 제공한다. 우선 본 연구가 제시하는 평화협정 시안이 4자 포괄협정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를 밝히고, 협정의 체결 시기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기존 연구의 평화협정 시안과 차별화되는 특징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과 9개조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주제어: 한반도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군비통제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 간 협상을 촉진하였고, 한반도 정세는 2017년 군사적 긴장고조 국면에서 2018년 대화·교류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특히, 남·북 및 북·미 간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전환 과정의 정점에 있었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고, 북미 정상은 『6·12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양국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였으며,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운용적 군비통제 착수에 합의했다.

3자 정상외교를 핵심 축으로 한 2018년 정세의 빠른 전환으로 2019년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평화협정에 관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남·북 정상은 이미 『4·27 판문점선언』에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추진에 대해 합의하였다. 미국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평화협정 서명의 당사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이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평화협정 체결시 한국과 중국이 서명의 당사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에 따른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중국이 그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¹⁾

* 이 보고서는 2019년 1월 31일 최종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2월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세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도 하노이 회담 이후 시점에서 볼 때는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의 연구진은 여기서 제시하는 평화협정 시안의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적 방향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세 변화에 따른 수정 없이 보고서를 출간하기로 하였다.

2019년 2월 말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평화협정 협상 착수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미 핵협상은 2018년 하반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견해 차이로 교착국면을 맞았지만, 2019년 1월부터 다시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1월 18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양자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이며, 양 정상 간 친서도 교환되었고,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위한 실무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특히 평화협정 협상 착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며, 협상 착수 시점은 2019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북한은 2019년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 즉 평화협정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고,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협정 협상 착수가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또한 양자 모두 평화협정 협상 착수에서 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핵협상이 다시 교착국면으로 전환되고, 평화협정 협상 착수가 지체되거나 어려워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적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구체적 합의와 이행이 이루어

정세 변화를 고려한 수정과 보완은 차후 토론의 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토론의 활성화는 본 연구과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은 저자들의 견해로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며, 지난 2018년 12월 12일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서 발표한 초안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함께 밝힌다.

1) White House, “Press Conference by President Trump,” June 12, 201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s-conference-president-trump/>> (검색일: 2019.1.7.);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with Traveling Press,” October 5, 2018. <<https://www.state.gov/remarks-with-traveling-press-2/>> (검색일: 2019.1.7.)

지지 못할 때, 한국은 물론 미국 정부가 가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며, 북한도 경제건설 집중 노선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남·북·미 3자 정상이 공유하고 합의하는 궁극적인 이익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기 때문이다.²⁾

2019년 상반기 평화협정 협상 착수 가능성은 과거에 평화협정 논의 자체를 어렵게 했던 요인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에 의해 서도 뒷받침된다.³⁾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냉전시기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은 주로 북한에 의해 제기되었고, 한·미는 평화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⁴⁾ 1990년대 이후 평화협정은 관련국 사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된 중요 이슈로 거론되어 왔지만,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사실상 부재했다. 과거 평화협정 협상의 부재는 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⁵⁾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비핵화와 평화 협정의 선후 문제 등에 대한 잠재적 협정 당사자 간 이견이 매우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4자(남·북·미·중)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이미 주한미군에 대한 매우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다.⁶⁾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 문제에 대한 타협 가능성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착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통일연구원, 『2019 한반도 정세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17~26.

3) 이와 관련하여 다음 참조.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25~41.

4) 위의 책.

5)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 관련 논쟁에 대해 다음 참조.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집 2호 (2009), pp. 53~93; 신욱희,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 2호 (2012), pp. 35~61.

6) 주한미군 철수 관련 북한의 입장에 대하여 다음 참조.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pp. 78~82.

이와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만, 아직 그와 관련한 학계 및 전문가 집단의 논의는 매우 미흡하다.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촉진에 관한 논의는 많지만, 평화체제의 핵심적 요소인 평화협정의 구조와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과거에 학계 혹은 시민단체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들(예, 박명립 안, 조성렬 안,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이 발표된 바 있지만,⁷⁾ 그 시안들은 2018년 남·북 관계 및 북·미 관계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사항들을 반영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는 평화협정 시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평화협정 시안을 구상하고 제시함을 통해, 평화협정에 관한 국내적, 국제적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평화협정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 간 논쟁을 수반하는 의제들을 다수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 합의의 과정은 정부 간 협상뿐 아니라 학계와 전문가 집단을 비롯한 사회적 논의를 요하게 될 것이며, 본 연구가 그러한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평화협정 시안을 제시하여, 정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평화협정 협상은 4개 당사자 간 타협의 과정이 될 것이며, 어느 한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합의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

7) 박명립,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민주법학』, 제25권 (2004), pp. 259~297;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서울: 푸른나무, 2007), pp. 437~443; 평화·통일연구소,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p. 30~39.

라는 한국의 궁극적 목표와 다른 당사자들의 입장을 감안하는 가운데, 실제적 합의 가능성을 고려한 평화협정문 시안을 제시하여, 정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론에 이어지는 제2장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제시한다. 시안은 전문(前文)과 9개 조로 구성된다. 제3장에서는 평화협정 시안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다. 해설에 있어서, 먼저 본 연구가 제시하는 평화협정 시안의 구조와 주요 내용, 특징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협정문의 전문과 9개 조에 대한 해설을 각각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록에서 평화협정 시안의 영문 번역본을 제시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국제적 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한(조선)반도 평화협정 시안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미합중국(미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대표는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67년 동안 한(조선)반도에서 지속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당사자들은 2018년 한국과 조선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조선과 미국 정상의 6월 12일 공동성명의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당사자들은 20세기 가장 비극적 사건의 하나였던 한국(조선)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 내정 불간섭, 상호 불가침, 유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의 금지, 국제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호혜와 공동번영,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 속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권리의 증진, 복지, 경제적·사회적 진보,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의 조항들에 합의하고,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제1조. 전쟁의 종식

1. 당사자들은 1953년도 『정전협정』에 따라 일시 정지되었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2. 1953년도 『정전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며, 이 협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제2조. 경계 및 평화지대

1. 한국과 조선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선을 육상 경계선으로 삼는다.
2. 한국과 조선은 동해상의 경계선을 위해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기존의 북방한계선을 사용하며, 서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되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기존의 북방한계선을 존중한다.

대안: 한국과 조선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선을 동해상 및 서해상의 경계선으로 삼는다.
3. 한국과 조선은 육상 경계선과 해상 경계선의 상공을 공중 경계 선으로 삼는다.
4. 한국과 조선은 2018년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재확인하면서,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영역을 육상의 평화지대, 해상의 평화수역, 공중의 비행금지구역,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5.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조선의 경계 및 평화지대에 관한 합의를 지지하며, 합의의 이행에 협력한다.

제3조. 불가침 및 안전보장

1. 당사자들은 유엔 현장 규정에 유념하면서, 상호 간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한다.
2. 한국과 조선은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3. 미국은 조선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조선도 미국에 대해 동일하게 확약한다.
4.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밖에서의 상호간 무력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유의하면서 무력 갈등 예방과 분쟁 발생 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 # 대안 (1): 한국과 조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력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존중한다.
 - # 대안 (2):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조선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역 분쟁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존중한다.

제4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1. 조선은 2020년 이내에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들을 완전히 폐기한다.
2.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조선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한반도 지역으로 전개, 배치, 경유하지 않는다.
 - # 대안: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조선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한반도 지역으로 전개, 배치, 경유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완료 이후 한국에 확장 핵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공약 하며, 중국도 조선에 확장 핵억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3. 조선은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가지며, 한국과 미국, 중국은 이를 존중한다.
대안: 조선은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가지며, 한국과 미국, 중국은 이를 존중한다. 또한 한국과 조선은 점차적으로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한국과 조선은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준수한다.
5. 한국과 조선은 한반도 비핵화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핵보유국의 한국과 조선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 금지를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조약을 이른 시일 안에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이 조약에 서명국으로 참여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조약 체결을 위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5조. 군비통제

1. 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체결한 군사동맹이 이 협정의 당사자들을 위협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2. 한국과 조선은 2018년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병력 감축을 포함한 군축을 추진하고, 미국도 한반도 군축에 동참한다.
3. 한국과 조선은 이 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대인지뢰금지 조약에 가입하며, 조선은 이 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한다.
4. 한국과 조선은 외국군과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

제6조. 한반도 평화관리 기구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데 동의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이 협정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구로서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이 기구는 이 협정의 당사자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4자 위원회로 구성된다.
 - ② 이 기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위치한다.
 - ③ 이 기구는 한반도의 평화가 공고화되면 그 임무를 종료한다.
3.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이 기구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의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 된다.
 - ② 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 한다.
 - ③ 이 기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위치한다.
 - ④ 이 기구는 한반도의 평화가 공고화되면 그 임무를 종료한다.

제7조. 양자관계 발전

1. 한국과 조선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평양과 서울에 각각 상주 대표부를 설치한다.
2. 한국과 조선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을 약속한 2018년도 『4·27 판문점선언』에 유념하면서, 양자관계 발

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법·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개폐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며, 조속히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고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민족적 화해의 증진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조선과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에 대사급 수교관계를 맺는다.
4. 조선과 미국은 양자관계 개선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법·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개폐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조속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5. 중국은 한국과 조선 그리고 조선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노력에 대해서 지지하고 협력한다.

제8조.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

1. 당사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지역의 평화와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러시아와 일본의 동의를 전제로 6자회담을 재개하여 지역의 안정과 항구적 평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
2. 당사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6자간 안보협력 협상의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하는데 동의한다.
3. 당사자들은 안보와 경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협상에서 철도, 에너지, 환경, 산업 등과 관련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

4. 당사자들은 조선이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회원국가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9조. 발효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각의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를 최종 접수한 날 후 **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III. 해설

1. 평화협정 시안의 구조와 주요 내용, 특징

가. 4자 포괄협정 방식의 채택

본 연구는 남·북·미·중 4자 간의 포괄적 협정 체결 방식을 채택한다. 한반도 평화협정⁸⁾은 1953년도 『정전협정』을 법적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따라서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3자(북·미·중)가 평화협정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을 제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할 수 없으므로 한국도 평화협정 협상과 체결에 참여해야 한다.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의 평화협정 체결 추진 합의는 곧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참여가 일관된 입장이다. 미국도 남·북·미·중 4자가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남북미중 4자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평화협정의 당사자 논쟁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2(남·북) + 2(미·중) 그리고 4(남·북·미·중) + 2(남·북) + 2(북·미) 방식은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함께 가진다.⁹⁾ 우선 2+2 방식은 남과 북이 협정

8) 국제법상의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 하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적 합의로 정의될 수 있다. 현실에서는 국제법상의 조약을 가리키는 말로 ‘조약’ 이외에 ‘현장’, ‘협약’, ‘협정’, ‘규약’, ‘의정서’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든 상기 정의에 합치되는 모든 합의는 국제법상의 조약임에는 차이가 없다. 용어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조약체결 관행에 따라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약’은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문서로서 정치적·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협정’은 당사자의 수도 적고 그 규율대상도 비교적 제한적인 특정한 문제를 상호 호혜적으로 다루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추후 합의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평화조약’이라는 명칭이 채택될 수도 있고 ‘평화협정’이라는 명칭이 채택될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적으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9) 2+2 방식의 예로 박명립의 안, 4+2+2 방식의 예로 조성렬의 안을 들 수 있다. 박명립,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pp. 259~297;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pp. 437~443.

에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의 1차적 주체가 남과 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보장자에 그침으로서,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법적으로 대체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호성이 남으며, 한반도 평화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¹⁰⁾ 또한 4+2+2 방식은 4자 간 본 협정과 양자 간 부속협정을 구분하는 방식으로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양자관계에서의 합의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본 협정과 부속 협정 합의 내용 구분의 모호함과 합의의 중복성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양자 간 합의에 대한 나머지 양자의 지지와 협력을 명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4자 포괄협정 방식을 채택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4자 간 합의, 양자 간 합의, 1국의 공약을 하나의 협정문 안에서 모두 다룬다.¹¹⁾ 구체적으로는 협정문의 각 조항에서 주어를 달리 사용하여 행위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하나의 협정문이 모든 당사자의 공약, 양자 간 공약, 1개 당사자의 공약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각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주어로 “당사자들(4자를 의미함)”, “한국과 조선”, “조선과 미국”, “미국과 중국”, “조선은” 등을 주어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4자 포괄협정 방식은 정전 협정의 법적 대체 여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함은 물론이고, 남북, 북미, 미중 등 양자 간 사안에 대한 합의 그리고 어느 한 당사자의 공약을 하나의 협정문에서 포괄하면서, 각 당사자의 책임, 의무, 혹은 권리에 관한 공약에 대해 4자가 상호 확인/서명하고, 모든 조항에 대한 4자의 지지와 협력을 보장하는 장점을 가진다.

10) 평화·통일연구소,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p. 44~50.

11) 본 연구가 채택하는 4자 포괄협정 방식은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시안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협정 시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 협정의 체결 시기와 주요 내용

본 연구는 평화협정 체결 시점을 2020년 초로 설정하면서 그 때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¹²⁾ 이와 같이 평화협정 체결 시점을 잡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화협정이 비핵화 완료, 군비통제, 관계 정상화를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평화협정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점을 2020년 이내로 명시하고, 북미 및 남북관계의 정상화, 한반도 군비통제 등을 구체적으로 공약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보장하고자 한다. 이는 곧 4자의 평화 협정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간략한 로드맵 혹은 시간표에 대한 합의를 포함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 체결 시점 가정의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정치일정과 관련된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선거는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8년 6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향후 2년 반 이내, 즉 2020년 말까지 북한의 비핵화 완료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2018년 9월 초 한국의 대북특사단 면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 비핵화 완료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우려는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부담이 커져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대북정책 관련 유연성 발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2020년 초반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2020년 하반기에 비핵화 완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보고서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정세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며, 따라서 여기서 제안하는 평화협정 체결 시점은 현실 적용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가 가정하는 평화협정 체결 시점은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척된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기 보다는 2020년 말 이내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시간표를 고려하는 가운데, 평화협정의 비핵화 촉진 효과 및 미국의 국내정치를 염두에 둔 결과이다.¹³⁾

평화협정 체결 시점은 협정문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2020년 초반을 협정 체결 시점으로 잡으면서, 평화협정 시안의 전문(前文)과 9개 조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전문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목적, 역사적 의미, 기본 정신, 그리고 기여하는 바를 제시한다. 전문의 뒤를 잇는 9개 조항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남·북 간의 경계선을 획정하며, 불가침과 안전보장을 공약하고, 비핵화와 군비통제에 대해 합의하며, 한반도 평화관리기구 신설 및 양자관계 발전에 대해 합의하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협력에 대해 합의한다. 비핵화 완료 이전 평화협정 체결을 가정하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4개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인 조항으로 포함되며, 북·미 간 대사급 수교에 관한 공약이 비핵화 조항과 연계되어 명시된다.

협정문 각 조항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질지의 문제도 협정 체결 시기와 관련될 수 있다. 즉 평화협정의 내용은 체결

13)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척된 상태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지난 2018년 12월 12일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서 보고서 초안을 발표할 때 “비핵화 50% 수준”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수정·보완을 위한 토론 과정에서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시기에 대한 판단은 실제로 협상 당사자 간 정치적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몇% 수준’ 인지를 명시적으로 논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20% 진척된다면 비가역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점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칙적이거나(최소주의 접근) 또는 구체적일 수 있다(최대주의 접근). 협정 체결 시점이 늦어질수록 구체적이며 광범한 내용을 담을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2020년 초반을 협정 체결 시기로 잡으면서, 원칙성을 강조하는 최소주의와 구체성을 강조하는 최대주의의 장·단점을 고려한 절충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이는 최소주의를 택할 경우 구체적인 공약의 부족에 따른 협정 체결의 의미 축소 가능성 그리고 최대주의를 택할 경우 논쟁의 장기화로 합의의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을 모두 감안한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가능한 구체성·명확성을 추구하되, 민감한 사안이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합의하기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성 혹은 추상성을 높여서 합의하고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논쟁의 소지가 큰 반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이슈는 협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 기타 특징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 이외에도 본 연구가 제시하는 평화협정 시안은 과거의 시안들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 특징을 함께 가진다. 첫째, 기존 평화협정 시안들은 대체로 양자관계 발전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 관련 내용을 주요 조항으로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¹⁴⁾ 남·북 간, 북·미 간 적대성 청산

14) ‘박명림 안’과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의 경우, 양자관계 정상화 및 동북아 지역 평화 관련 내용을 담지 않는다. ‘조성렬 안’의 경우에는 양자관계 정상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만,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 관련 조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박명림,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pp. 259~297;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pp. 437~443; 평화·통일연구소,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pp. 30~39.

과 관계 정상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적 요건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를테면, 미·중 간 혹은 중·일 간 군사적 분쟁이 한반도 평화를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평화협정 시안은 양자관계 발전과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 구체적 합의를 포함한다. 양자관계에 있어서는 남·북 및 북·미 간 관계 개선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폐 필요성, 북·미 간 대사급 수교 등이 강조되며, 지역 평화와 관련해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 시작을 명시한다.

둘째, 평화협정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 간 논쟁의 초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복수의 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남·북 간 서해상 경계선 획정 문제, 북한의 비핵화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핵억지 제공 지속 여부 등과 관련하여 쟁점이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쟁점 형성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기본안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정책적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사항을 반영하면서 그 합의의 이행이 촉진되고 평화체제 구축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평화협정의 시안을 구상하고 제시한다. 예를 들어, 2018년 남과 북은 한반도의 운용적 군비통제 착수에 합의했을 뿐 아니라 향후 군축 추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들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4자 간에 재확인되고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북·미 정상이 합의한 새로운 관계 수립,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도 평화협정을 통해서 구체화된 공약으로 명시되고, 4자의 확인과 서명 과정을 밟도록 한다.

2. 전문(前文)과 각 조항 해설

가. 전문

전 문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미합중국(미국),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대표는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67년 동안 한(조선)반도에서 지속된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당사자들은 2018년 한국과 조선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조선과 미국 정상의 6월 12일 공동성명의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당사자들은 20세기 가장 비극적 사건의 하나였던 한국(조선)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고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 내정 불간섭, 상호 불가침, 유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의 금지, 국제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 호혜와 공동번영,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 속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권리의 증진, 복지, 경제적·사회적 진보,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의 조항들에 합의하고,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의 전문(前文)은 우선 협정의 당사자가 한국, 조선, 미국, 중국임을 명시하는 가운데, 협정의 목적이 한반도에서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있음을 뚜렷하게 밝힌다. 다음으로 최근의 선행 합의의 의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협정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 일반 원칙을 존중함을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기본 정신과 기여하는 바를 제시한다.

해외 사례들의 경우, 평화협정의 전문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전문에서 평화협정 체결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향후 과제만을 열거하는 최소주의적 접근 방식, 또는 평화체결의 역사적 의미를 넓게 포괄하는 최대주의적 접근 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평화협정 체결에 이르는 과정 혹은 전쟁의 성격, 국가 간

관계의 특수한 환경 등에 기인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전쟁의 중지에 관한 정전협정 체결이후 약 67년 만에 체결되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로서, 그 의미가 심대하며 한반도는 물론이고 지역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평화협정 시안의 전문에서 협정의 목적, 의미, 기본 정신, 기여 등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힌다.

본 시안의 전문이 제시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목적, 즉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은 우선적으로 남북 간 선행 합의에 근거한다. 남·북 정상은 2007년 『10·4 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armistice regime)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제4조)고 밝혔고,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는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the current unnatural state of armistice)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제3조 1항)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남·북 정상 간뿐만 아니라 한미, 북·미 정상 간에도 관련 합의가 있었다. 2005년 11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정전체제(armistice mechanism)로부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은 정전체제 또는 정전상태라는 표현을 생략한 채 양국이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안정적 평화체제(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협정의 목적에 이어 선행 합의서에 대한 평가 및 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제시한다. 그 동안 관련된 선언과 합의가 다양하게 있었으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직접적으로 연계해 제시된 선언과 합의(『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6·12 북미공동선언』)에 국한해 그 취지를 반영했다. 한편 종전선언도 평화협정의 제1조 1항의 핵심내용에 해당할 정도의 깊은 관련성이 있어, 만약 평

화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그 역사적 의의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 체결의 세계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국전쟁을 “20세기 가장 비극적 사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전협정에는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충돌”이라는 표현만이 등장했었다.

본 시안의 전문은 평화협정의 기본 정신으로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주(주권과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평화(불가침, 한반도 비핵화), 보편(국제법 이행), 발전(호혜와 공동번영)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논의되었던 사안이 아니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평화협정이 비핵화 속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비핵화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반도 비핵화라는 분명한 원칙을 정하는 한편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본 시안의 전문은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 증진,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평화 그리고 미래가치(경제적·사회적 진보,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 명시하였다.

본 시안은 협정 서명의 주체를 명시하기 위해 ‘국가’인 당사국 대신에 ‘당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 또는 4개국 대신 “당사자(party)”로 표기하였다. 즉, 이 표현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베트남 평화협정(1973년), 코소보 평화협정(1999년) 등에서 ‘당사자’ 표기를 사용해 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제1조. 전쟁의 종식

제1조. 전쟁의 종식

1. 당사자들은 1953년도 『정전협정』에 따라 일시 정지되었던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2. 1953년도 『정전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며, 이 협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본 시안은 제1조에서 전쟁의 종식을 규정한다. 이는 한반도가 아직도 법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technically still at war)는 것을 전제로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1953년 정전협정의 성격 및 효력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다수의 학자들은 적대행위의 잠정적·일시적 정지라는 고전적인 정전 개념에 기초하여 1953년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종료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다.¹⁵⁾ 반면, 일부 학자들은 정전 개념의 진화, 정전협정 전문상의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이라는 표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시간의 경과와 당사국의 실행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전쟁상태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실제로 전쟁상태는 평화협정의 체결 외에도 정전협정의 체결, 상호 묵시적 동의, 승전국의 일방적 선언 등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종료될 수 있다. 그러나 평화협정의 체결은 전쟁상태를 종결하는 가장

15) 예컨대, 김명기, 『한반도평화조약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국제법출판사, 1994), p. 25;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지평서원, 2000), p. 52; Gerhard Von Glahn, *Law among Nations: An Introdu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Macmillan Pub. Co., 1992), p. 727.

16) 예컨대,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2호, 2008, pp. 181~182;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43~44.

전형적인 방식이며, 평화협정은 전쟁상태의 종료라는 소극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 회복이라는 적극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이 이 같은 점들에 주안점을 두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전쟁의 공식적 종료는 평화협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과 북이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 상정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은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했다. 종전선언은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나,¹⁷⁾ 남·북 간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의 일부로서 종전선언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해당한다. 즉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 하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적 합의인 조약과는 구별된다. 이는 종전선언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법적 상태는 여전히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며, 한반도 전쟁상태의 법적 종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종전선언이 비구속적 합의라고 해서 이것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하기도 하며, 이 같은 합의는 조약에 못지않게 잘 준수되기도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17)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제4항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다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관련 당사자들이 전쟁상태를 종료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한다는 점에서 평화를 견인하는 장치로서의 종전선언의 정치적·상징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제2조. 경계 및 평화지대

제2조. 경계 및 평화지대

1. 한국과 조선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선을 육상 경계선으로 삼는다.
2. 한국과 조선은 동해상의 경계선을 위해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기존의 북방한계선을 사용하며, 서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되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기존의 북방한계선을 존중한다.
대안: 한국과 조선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선을 동해상 및 서해상의 경계선으로 삼는다.
3. 한국과 조선은 육상 경계선과 해상 경계선의 상공을 공중 경계선으로 삼는다.
4. 한국과 조선은 2018년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재확인하면서,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영역을 육상의 평화지대, 해상의 평화수역, 공중의 비행금지구역,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5.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조선의 경계 및 평화지대에 관한 합의를 지지하며, 합의의 이행에 협력한다.

본 시안은 제2조에서 남과 북의 경계 및 평화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과 북의 육상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1953년 정전협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¹⁸⁾ 그러나 본 시안에서 제1조

18) 정전협정 제1조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이(2)키로메터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경계선 및 남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11. (생략)

제2항에 따라 정전협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남과 북의 육상 경계선의 설정과 기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이 평화협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안 제2조에서는 육상의 경계선과 평화지대를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상 및 공중의 경계선과 해상·공중·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킴으로써 남과 북의 경계 및 평화지대 전반을 규율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육상 경계선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육상 경계선의 경우 정전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분계선이 육상 경계선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없다. 다만, 과거에 제시된 평화협정 시안들은 대체로 ‘남과 북의 지상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육상 경계선은 정전협정의 조항에 따른다’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전협정에 근거를 두는 규정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협정의 체결로 정전협정은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시안에서는 남과 북의 육상 경계선을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물론 이 경계선은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상의 군사분계선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시안 제2조 제2항에서는 해상 경계선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정전협정에는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ㄴ호는 상대방 지역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모든 병력을 철수한다는 것, 여기서 상대방 지역의 연해도서란 현재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50년 6월 24일 당시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한다는 것,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도서 중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이른바 서해 5도)는 유엔군 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두고 이를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북측의 군사통제 하에 두며 이 경계선 이남의

모든 도서는 남측의 군사통제 하에 둔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한 달 후인 1953년 8월 30일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서해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5도와 북한 지역 간 대략의 중간선에 해당하는 11개의 좌표를 설정하여 연결한 선으로 그어졌고, 동해의 북방한계선은 육상의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같은 위도의 동쪽 방향으로 연장한 선으로 그어졌다. 북한은 이러한 북방한계선의 설정에 대하여 상당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1973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9년 9월에는 등산곶과 굴업도, 옹도와 서격렬비열도의 등거리선인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였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였다.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제11조와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며,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1992년 남·북 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 제10조를 둘러싸고도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¹⁹⁾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방한계선이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

19) 예컨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제11조와 1992년 남북 불가침 관련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북한 간에 묵시적으로 합의·존중되어 온 북방한계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견해로는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pp. 252~253;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은 정전협정상 서로 존중하도록 한 쌍방 육지에 인접한 연안, 즉 ‘인접해면’으로 보아야 하며 북방한계선을 경계로 하는 남북의 수역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로는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성격과 정전협정상의 해상불가침 구역,” 『인권과 정의』, Vol. 375, 2007, p. 47.

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과 북의 입장 차이를 고려할 때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서해상의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시안에서는 “서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되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기존의 북방한계선을 존중한다”는 규정과 “한국과 조선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한 선을 동해상 및 서해상의 경계선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 ‘서해 북방한계선’이란 용어가 포함되었고,²⁰⁾ 2018년 9월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사용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 공식문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안 제2조 제3항에서는 공중 경계선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다만, 해상 상공의 경우 서해상의 경계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그에 따라 공중 경계선이 설정될 수 있다.

시안 제2조 제4항에서는 육상의 평화지대, 해상의 평화수역, 공중의 비행금지구역,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견인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판문점

20) 판문점선언 제2조 제2항은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언에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갈 것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평화지대 및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군사분계선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합의서가 일종의 공동선언 또는 신사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함으로써 그 효력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화 협정에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규범력과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안 제2조 제5항에서는 남·북 간의 경계 및 평화지대에 관한 합의에 대한 미·중의 지지와 협력을 규정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전쟁과 갈등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특히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본 시안은 4자 포괄협정 방식을 택하면서도 경계 및 평화지대에 대한 합의의 주체를 남과 북으로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과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보장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제5항을 추가하였다.

라. 제3조. 불가침 및 안전보장

제3조. 불가침 및 안전보장

1. 당사자들은 유엔 헌장 규정에 유념하면서, 상호 간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한다.
2. 한국과 조선은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3. 미국은 조선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조선도 미국에 대해 동일하게 확약한다.
4.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밖에서의 상호간 무력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유의하면서 무력 갈등 예방과 분쟁 발생 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다.
 - # 대안 (1): 한국과 조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력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존중한다.
 - # 대안 (2):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조선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역 분쟁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존중한다.

제3조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불가침 및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다. 과거에도 당사자들 사이에 이와 유사한 합의가 있었다. 1994년 북·미 간의 제네바 기본 합의에선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보장을 제공한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서도 유사한 약속이 있었지만, 비핵화 협상이 좌초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남·북 간에도 1991년 기본합의서를 통해 상호 불가침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지만 그 이후 북핵 문제 및 남북관계 악화로 준수되지 못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평화협정에 불가침과 안전보장을 명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불가침 및 안전보장을 명기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한국전쟁의 실질적인 교전 당사자들이자 현재 및 미래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미·중 모두가 조인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 경계선의 획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군비통제 및 평화관리 기구의 창설, 양자 관계 개선,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 등과 병행됨으로써 불가침 및 안전보장의 완전성과 불가역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는 제3조의 1항은 국제 평화 유지와 분쟁 해결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현장의 정신과 규정을 환기한 것이다. 또한 평화협정의 당사자들이 모두 유엔 회원국들이라는 점에서 유엔 현장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제3조 2항은 남북한 사이의 상호 불가침과 안전보장을 명기한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과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기로 한다”는 『9·19 평양공동선언』 및 그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를 재확인하면서 지속적이고도 성실한 준수 및 이행 의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제3조 3항은 북·미 간의 상호 불가침 및 안전보장을 명기한 것이다. 이미 미국은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인”한 바 있고,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본 협정 시안에서는 “미국은 조선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고 명기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 동일한

약속을 한 바가 없고 불가침은 상호호혜주의 정신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선도 미국에 대해 동일하게 확약한다”는 조항을 명기하였다.

제3조 4항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 행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국 배치·전개·경유 군사력을 중국을 염두에 두는 형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이 자신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사드 배치 논란에서 이미 확연히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미·중 간의 전략적인 군사 경쟁이 격화되어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미국이 한국에 배치·전개한 군사력을 중국을 겨냥해 투입할 경우, 한국은 미·중 무력 충돌에 정면으로 휘말릴 위협이 크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본 시안은 우선적인 안으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밖에서의 상호 간 무력 갈등이” 지역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해 미·중 양국에게 “무력 갈등 예방과 분쟁 발생 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논란의 소지도 크다. 무엇보다도 군사력 운용의 제약을 기피해온 미국이 이러한 조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대안도 병기하였다. 대안 (1)은 “한국과 조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력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존중한다”는 것이고, 대안 (2)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조선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역 분쟁에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은 2006년 한미 간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한·미 양국 사이에선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 제4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제4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1. 조선은 2020년 이내에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들을 완전히 폐기한다.
2.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조선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한반도 지역으로 전개, 배치, 경유하지 않는다.
대안: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조선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한반도 지역으로 전개, 배치, 경유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완료 이후 한국에 확장 핵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공약하며, 중국도 조선에 확장 핵억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3. 조선은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가지며, 한국과 미국, 중국은 이를 존중한다.
대안: 조선은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가지며, 한국과 미국, 중국은 이를 존중한다. 또한 한국과 조선은 점차적으로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한국과 조선은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준수한다.
5. 한국과 조선은 한반도 비핵화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핵보유국의 한국과 조선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 금지를 포함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조약을 이른 시일 안에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이 조약에 서명국으로 참여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조약 체결을 위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내용이다. 본 시안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적이고도 중대한 목표로 삼으면서도 핵보유국들의 남북한에 대한 잠재적인 핵 위협의 근원적인 해소도 필요하다는 조항도 명기하였다.

제4조 1항은 북핵 해결 원칙과 목표를 명기한 것이다. 완전한 폐기의 대상으로는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들”로 명시하였고, 그 시한을 “2020년 이내”로 제시하고 있다. 본 시안에서는 이러한 북핵 폐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즉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전된 시점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는 취지를 담고 있고, 평화협정 체결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방식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반영되어 있다.

제4조 2항은 핵보유국들인 미국과 중국의 남북한에 대한 의무를 명기한 것이다. 이 조항의 특기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소극적 안전보장, 즉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러한 의무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1994년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 성명보다 진전된 내용을 명기했는데,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을 한반도 지역으로 전개, 배치, 경유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핵우산에 해당되는 확장 핵억지 철수를 명기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소극적 안전보장 및 핵과 그 투발수단의 전개, 배치, 경유를 금지한 만큼 핵우산 철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 따라 기본안에는 이 구절을 제외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장거리 투발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소극적 안전보장이 반드시 핵우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대안에선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 완료 이후 한국에 확장 핵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공약하며, 중국도 조선에 확장 핵억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구절을 포함시켰다. 중국에 대해서 “재확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타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제4조 3항은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에 관한 내용이다. 기본안에선 “조선은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가지며, 한국과 미국, 중국은 이를 존중한다”고 기술했다. 다만 핵이 대표적인 이중 용도 기술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도 제한하거나 금지되어야 한

다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핵무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시설을 폐기할 것을 1항에 명기하였고, 4항에선 “한국과 조선은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준수 한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구절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핵 물질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은 영구적인 폐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4조 3항의 대안은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이 탈핵 비전을 발전시키고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참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인간과 자연에 치명적인 위협을 할 수 있고, 사용후 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 처리가 여의치 않으며,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경제성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한국 정부는 장기적 과제로 점진적인 탈원전 비전을 선포한 상태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대안에선 “한국과 조선은 점차적으로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4조 4항은 “한국과 조선은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준수한다”는 내용이다. 과거에도 이러한 합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평화협정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더불어 남북한의 자발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제4조 5항은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과 관한 것이다. 비핵지대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에 해당되어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한반도”를 남·북한이 주도하고 국제적으로도 협력·공인받는다는 취지를 품고 있다. 또한 비핵국가의 의무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의 의무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와 목표를 반영해 본 시안에서는 남·북한이 비핵지대 내 당사자들로서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조약을 이른 시일 안에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기하였다. 동

시에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들이자 핵보유국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미국과 중국의 의무와 역할도 명기하였다. 이들 나라에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에 ‘지대 밖 서명국’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의 논의도 주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 제5조. 군비통제

제5조. 군비통제

1. 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체결한 군사동맹이 이 협정의 당사자들을 위협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2. 한국과 조선은 2018년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병력 감축을 포함한 군축을 추진하고, 미국도 한반도 군축에 동참한다.
3. 한국과 조선은 이 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대인지뢰금지조약에 가입하며, 조선은 이 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가입한다.
4. 한국과 조선은 외국군과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

군축(disarmament)과 군비통제(arms control)는 전쟁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 만들기의 한 방법이다.²¹⁾ 국가 간에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의 개발·배치·운용 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조절하는 군비통제는 한 국가가 보유중인 군사력 전반 또는 특정 무기체계의 감축 또는 폐기를 의미하는 군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²²⁾ 그러나 군비통제와 군축이 실현되더라도 평화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집단, 국가 수준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근원적 원인이 남아 있는

21) D. Barash and C. Wei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 (London: Sage, 2018), ch. 13.

22) 외교부, “[최신] 군축 및 군비통제의 개념,” (자료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 외교정책 > 안보 > 군축·비확산 > 기초자료) (2007.10.8.) <http://www.mofa.go.kr/www/brd/m_3988/view.do?seq=30417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e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 (검색일: 2019.1.7.).

한, 전쟁의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군비통제와 군축은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전쟁의 확률을 줄이는 한 방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군축과 군비통제의 항목을 담고 있다.

남·북한은 2018년 4월 27일 『4·27 판문점선언』에서 “한반도에서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화”, “남북교류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 “군사당국자회담의 개최” 등이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군사분야 합의서』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언급된 한반도 군축과 군비통제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계획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합의의 실행을 위한 연합적 거버넌스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평화과정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인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조의 1항은 당사자 간 동맹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한국은 1953년 10월 미국과, 북한은 1961년 7월 중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동맹은 남·북한이 서로를 적과 위협으로 인식하고 외부의 힘을 동원하는 외적(external) 세력균형정책의 산물이다. 더 이상 서로를 적과 위협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이 평화협정이 한국과 북한이 각각 체결한 동맹의 해체 절차를 밟지는 않지만, 최소한 각각의 동맹이 서로를 적과 위협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필요하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한반도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위한 기본적 계획을 포함하며, 이 평화협정의 지속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 혹은 군축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제5조 2항을 통해 남·북한의 군축 협의 차수 공약을 명시한다. 또한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주한미군도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5조의 2항은 미국도 한반도 군축에 동참한다는 공약을 포함한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대인지뢰를 포함한 군사무기의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합의한 바 있다. 남·북한이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Ottawa Treaty)에 가입하는 것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국제적 약속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1997년 4월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에 북한이 가입한다면, 한반도의 군축과 군비통제의 의지를 담은 국제적 약속이 될 것이다.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합의에 기초하여, 군사동맹에 따라 진행되는 대규모 연합군사훈련도 같은 맥락에서 중단이 필요하다. 이 평화협정을 생산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2018년 12월 19일 한국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선제적 연기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 제6조. 한반도 평화관리 기구

제6조. 한반도 평화관리 기구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데 동의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이 협정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구로서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이 기구는 이 협정의 당사자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4자 위원회로 구성된다.
 - ② 이 기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위치한다.
 - ③ 이 기구는 한반도의 평화가 공고화되면 그 임무를 종료한다.
3.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이 기구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 ② 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추진한다.
 - ③ 이 기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위치한다.
 - ④ 이 기구는 한반도의 평화가 공고화되면 그 임무를 종료한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는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임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부여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정전협정 서명자인 유엔군,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여한 기구로, 한국전쟁의 정전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기구였다. 1991년 3월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한 이후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 불참했다. 1993년 4월에서 1995년 2월의 기간 동안 북한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체코와 폴란드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중국 대표단을 절수시켰다. 그리고 1994년 5월에는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북한의 기구로 ‘조선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전쟁의 정전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기구로서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다.

정전협정이 정전을 관리하는 기구를 필요로 한 것처럼, 평화협정은 평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구를 필요로 한다. 이 기구는 이른바 평화과정 이후의 평화과정인 ‘포스트(post) 평화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평화과정과 함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새로운 평화관리 기구의 구성이 곧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자동적인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엔사의 해체는 필요하며, 해체를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²³⁾ 그 이유는 우선 정전협정의 준수와 관리라는 유엔사의 핵심적 임무가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며, 또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군 지휘라는 유엔사의 기능도 정전체제의 산물이며 평화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²⁴⁾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 북한군 격퇴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사는 태생적으로 북한에 적대적이며,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유엔사가 유지되는 평화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²⁵⁾ 더불어서 1975년 유엔총회에서 이미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⁶⁾

유엔사 해체에 필요한 절차는 논쟁적이다. 유엔사의 창설이 1950년 7월 유엔안보리 결의에 기초하므로 해체를 위해서는 새로

23)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유엔사 해체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참조.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183~188.

24) 위의 글: 유엔사 창설 과정 및 임무와 관련하여 다음 참조. 이상철, 『한반도 정전체제』(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25)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183~188;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pp. 321~323.

26)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에 관한 두 가지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정전협정의 대안에 관한 협상 돌입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 해체에 관한 것이다.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183~188;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집 2호 (2009), pp. 53~93.

운 유엔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사실상 유엔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통제 하에 운영되는 기구이므로 미국의 동의만으로 해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²⁷⁾ 본 평화협정 시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협정의 당사자들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해체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가 군사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평화협정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조선은 남북미 3자 군사공동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고,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남북미 중 4자 군사공동위원회도 제안된 바 있지만, 3자 위원회는 4자 평화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고, 4자 군사공동위원회는 중국 군을 다시금 한반도에 불러오는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민간으로 구성되는 4자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가 적절하다는 것이 우리의 의견이다.

4자 평화관리위원회는 대부분의 평화과정에서 정식화되는 것처럼, 협의주의적(consociational) 방식으로 평화를 관리하는 연합적(confederal) 평화관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화관리가 권력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때, 이는 불가피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협의주의적 연합이 가지는 한계 가운데 하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항대립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주의는 다수 결의 원칙과 공존할 수 없다. 평화관리위원회의 모든 행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제도의 작동 자체가 위기를 내장할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만들어지는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국제위원회’는 미·중을 제외한 안보리 상임

27)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183~188; 이상철, 『한반도 정전체제』(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pp. 79~102.

이사국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의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양심적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엔 사무총장의 추천 인사들을 포함한다. 이 국제위원회는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 제7조. 양자관계 발전

제7조. 양자관계 발전

- 한국과 조선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평양과 서울에 각각 상주 대표부를 설치한다.
- 한국과 조선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을 약속한 2018년도 「4·27 판문점선언」에 유념하면서, 양자관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법·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개폐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며, 조속히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고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민족적 화해의 증진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한다.
- 조선과 미국은 조선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에 대사급 수교관계를 맺는다.
- 조선과 미국은 양자관계 개선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법·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개폐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조속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 중국은 한국과 조선 그리고 조선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노력에 대해서 지지하고 협력한다.

본 시안의 7조는 양자관계 발전에 관한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오랜 기간 적대관계를 지속해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시안은 남·북 관계의 발전과 북·미 관계의 개선에 관한 남·북·미 3자의 공약 그리고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력에 관한 공약을 중요한 조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평화협정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제1항에서는 평화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남과 북이 평양과 서울에 각각 상주 대표부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명시하였다.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의 설치는 남·북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상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남·북 간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 촉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개성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남·북 관계 제도화의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의 설치는 남·북 관계의 제도적 발전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들어 서게 됨을 의미하며 이후 분야별(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상설공동 위원회의 구성을 비롯한 연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항에서는 남·북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법·제도의 개 폐를 공약하고 자유 왕래와 접촉의 실현,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제1조에서 남·북 관계의 획기적·전면적 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현재 남과 북은 여전히 공히 서로 를 적대시하거나 또는 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주민접촉 신고제, 남·북교류협력법 상의 북한 방문시 통일부장관 승인 필요 조항 등이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최상위 법규라 할 수 있는 노동당 규약에서 남한을 여전히 ‘공산화’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 관계의 획기적·전면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제 도의 개정 혹은 폐지가 필요할 것이며, 그에 대한 포괄적·원칙적 공약 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3항에서는 북·미 간 대사급 수교를 공약한다. 북·미 간 공식 수교 와 워싱턴-평양 대사관 설치는 양자관계의 정상화를 실질적으로, 상징 적으로 의미한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대사급 수교가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가능한 조기에 미국과의 수교를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전에 대사급 수교를 맺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시안은 북한의 비핵화 완료와 동시에 혹은 비핵화 완료 이후 2020년 이내에 북·미가 대사급

수교를 맺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의 개설도 양자 외교관계 진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이는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이미 현실화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협정 시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4항은 북·미 양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법제의 개폐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관한 공약이다. 남·북 관계와 마찬가지로 북·미 간에도 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들이 존재한다. 관건은 대북 제재 관련 미국 법제의 개폐라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후 약 65년 넘게 (강화 혹은 완화의 변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해왔고,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대북제재 특별 법을 제정하는 등 사실상 북한과의 모든 교류·협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 간 교류·협력 증진과 관계 정상화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북한도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의 개폐는 미국의 국내 정치과정에서의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시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이른 시일 안에 개폐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한다.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이외에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도 현재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시안 작성을 위한 토론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완료와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어떤 대북제재도 더 이상 잔존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 혹은 해제는 평화협정 체결 이전 비핵화 협상에서 이미 논의되고 실행될 수 있으며, 또한 비핵화 완료와 더불어 북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어떤 제재도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자명하므로 본 시안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자. 제8조.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

제8조. 지역 평화를 위한 협력

1. 당사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정책이 지역의 평화와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이 협정의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러시아와 일본의 동의를 전제로 6자회담을 재개하여 지역의 안정과 항구적 평화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
2. 당사자들은 한반도의 원전한 비핵화를 지속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비핵지대화를 6자 간 안보협력 협상의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하는 데 동의한다.
3. 당사자들은 안보와 경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동북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을 위한 협상에서 철도, 에너지, 환경, 산업 등과 관련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
4. 당사자들은 조선이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회원국가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2005년 『9·19 평양공동선언』에 명기된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과 함께 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절대적인 국가안보란 관념을 넘어설 때 가능한 미래의 지향점인 것처럼, 동북아에서 공동안보와 협력안보란 관념이 공유될 때, 한반도 평화체제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된다. 북한과 일본이 2002년 9월 합의한 『조일공동선언』과 2003년 후반부터 시작된 6자회담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위한 자산이다. 6자회담의 재개는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사안이다.

동북아 비핵지대화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한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NPT체제에서 한계가 있지만, 한반도와 일본의 비핵지대화를 핵심으로 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의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경제위기는 동북아 협력을 견인하는 요소

들이다. 안보 측면의 협력과 경제 측면의 협력이 함께 진행될 때 동북아시아의 다자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더욱 촉진될 수 있다. 특히 몇몇 평화협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자적 경제지원은 평화과정 이후의 평화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평화협정에 명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수행하는 동북아 차원의 국제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아래로부터의 평화과정을 위해 동북아 시민사회와 북한이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이야말로 평화협정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동북아 협력의 제도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이 제도에 북한의 참여를 견인한다면, 이 평화협정의 실행과 동북아 협력에 기여할 것이다.

차. 제9조. 발효

제9조. 발효

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각의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를 최종 접수한 날 후 **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 시안은 제9조에서 협정의 발효 방식 및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제법상의 조약은 발효함으로써 비로소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즉 발효일은 조약이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때인 동시에 대내적으로도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때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조약의 법적 구속력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표시되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서명과 비준이다.²⁸⁾ 각 조약의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하여 기속적 동의 표시 방법을 결정하는데, 평화협정과

같이 정치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의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표시를 위한 국내절차는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약의 당사자가 국내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완료하면 이 사실을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 같은 통보들이 당사자들 상호 간에 모두 이루어진 시점 이후에 조약이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조약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고 조약문이 채택되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국회 동의(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일 경우)²⁹⁾ 등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

-
- 28) 서명이란 조약의 작성에 참여한 국가의 대표가 조약문 말미에 자신의 자격과 성명을 기록하는 행위이다. 과거에는 서명이 조약문의 채택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대사회에서 조약 체결 건수가 급증하면서 비교적 일상적 내용의 조약에 대해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는 간이한 체결절차를 활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비준이란 조약의 서명국이 조약 내용을 정식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구속받겠다는 의사를 상대국에게 통고하는 국제적 행위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이론과 사례』(서울: 박영사, 2018), pp. 294~296.
- 29) 헌법 제60조 제1항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국회 동의 대상 조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록: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의 영문본

A Draft of The Korean (Joseon) Peninsula Peace Agreement

The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held negotiations with the objective of signing a peace agreement to bring an end to the armistice regime, which has lasted on the Korean (Joseon) Peninsula for the past sixty seven (67) years since the conclusion on July 27, 1953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Jose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arties highly appreciated the historic and future-oriented significance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April 27 and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born from the summits of 2018 between ROK and DPRK, and the Joint Statement of June 12 signed at the Singapore summit in 2018 between DPRK and the United States. The Parties are convinced that officially ending the Korean (Joseon) War, one of the most tragic events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building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principles of respect for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non-intervention, mutual non-aggression,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or threat to use force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faithful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mutual benefit and co-prosperity,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human dignity and rights, welfar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and regional and global peace. Accordingly, the Parties decided to agree upon, respect, and implement the following provisions:

Article 1. End of War

1. The Parties shall officially end the Korean War, which was temporarily ceased in accordance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of 1953.
2. The Armistice Agreement of 1953 shall cease to have effect on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hall be replaced by this Agreement.

Article 2. Borders and Peace Zones

1. ROK and DPRK shall consider the line marked in the attached map in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to be their land border.
2. ROK and DPRK shall use the existing Northern Limit Line marked in the attached map in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as their border in the East Sea, and, while they shall hold continuous consultations on their border in the West Sea, they shall respect the existing Northern Limit Line marked in the attached map in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until a border line is finalized.

Alternative: ROK and DPRK shall use the line marked in the attached map in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as their border in the East Sea and the West Sea.

3. ROK and DPRK shall consider the sky above their land border and their maritime border to be their airspace border.
4. ROK and DPRK, reaffirming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of 2018, shall designate and manage the zones marked in the attached map in the Annexes to this Agreement as an on-land peace zone, a maritime peace zone, No-Fly Zones and a joint utilization zone of the Han (Imjin) River Estuary.
5.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hall support the agreement on the border lines and peace zones between ROK and DPRK, and shall cooperate for its implementation.

Article 3. Non-Aggression and Security Guarantee

1. The Parties,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s of the UN Charter, shall resolve all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them through peaceful means.

2. ROK and DPRK shall reaffirm and strictly adhere to the Non-Aggression Agreement that precludes the use of force in any form against each other and shall completely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including land, air and sea that are the sourc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3. The United States shall pledge to provide the security guarantee to DPRK and not use force in any form, and DPRK shall make the same pledge to the United States.
4.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hall not use force in any form withi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le serious consequences of an armed conflict between the two parties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shall develop proper procedures for armed conflict prevention and peaceful resolution in the event of a possible dispute.

Alternative (1): ROK and DPRK clearly stated that there should be no armed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ch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hall respect their will.

Alternative (2):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hall respect the stance of ROK and DPRK that they shall not be involved in any regional dispute irrespective of their own will.

Article 4.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 DPRK shall completely dismantle all nuclear weapons,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related to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s by 2020.
2.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hall not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ROK and DPRK, nor shall they deploy, station or transfer nuclear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o the Korean Peninsula.
Alternativ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hall not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ROK and DPRK, nor shall they deploy, station or transfer nuclear weapons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o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after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DPRK, the United States shall pledge not to provide extended nuclear deterrence to ROK, and China shall also reaffirm that it has no intention of providing extended nuclear deterrence to DPRK.
3. DPRK shall have the right to peaceful nuclear use, and RO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hall respect such right.
Alternative: DPRK shall have the right to peaceful nuclear use, and RO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hall respect such right. ROK and DPRK also agreed to pursue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in order to gradually resolve energy issues without relying on nuclear energy.
4. ROK and DPRK shall comply with the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1992.

5. ROK and DPRK agreed to work towards signing a treaty on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prohibiting the use and the threat of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ROK and DPRK by all countries possessing nuclear weapons, as early as possible to further solidify the denuclearization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lso pledged to participate in the treaty as signatories and agreed to hold consultations with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o sign a treaty on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 Zone on the Korean Peninsula.

Article 5. Arms Control

1. The Parties shall pledge that military alliances signed among them will not threaten any other Party to this Agreement.
2. ROK and DPRK shall implement the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 of 2018 and pursue arms reduction, including a reduction in force, through the Inter-Korean Joint Military Committee, and the United States shall participate in the arms reduction of the Korean Peninsula.
3. ROK and DPRK shall join the 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within ninety (90) day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DPRK shall also join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within ninety (90) day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4. ROK and DPRK shall not conduct large-scale joint military drills with foreign troops.

Article 6. Korean Peninsula Peace Management Organizations

1. The Parties shall agree to dissolve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rough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within ninety (90) day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Within ninety (90) day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Korean Peninsula peace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s a new organiz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the manag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① This organization shall be composed as a quadrilateral committe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 ② This organization shall be located in the Joint Security Area at Panmunjom.
 - ③ This organization shall terminate its mission whe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solidified.
3. Within ninety (90) day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manag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hall be established as an organization that will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mediate different views that may arise among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 ① This organization shall be composed of the representatives of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except fo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others recommended by the UN Secretary General.
- ②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shall be adopted to establish this organization.
- ③ This organization shall be located in the Joint Security Area at Panmunjom.
- ④ This organization shall terminate its mission whe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solidified.

Article 7. Advancement in Bilateral Relations

- 1. ROK and DPRK shall install their delegation with resident representatives in Pyongyang and Seoul, respectively, within ninety (90) day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 2. ROK and DPRK, bearing in mind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of 2018, which pledged comprehensive and ground-breaking advanc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shall jointly endeavor to revise or abolish laws and institutions, which may block advancement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as early as possible, and work to encourage the promotion of national reconciliation and

co-prosperity by immediately realizing free visits and contacts and by invigorat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all fields, including the economic field.

3. DPRK and the United States shall establish ambassador-level diplomatic relations by 2020, within which the denuclearization of DPRK is set to be complete.
4. DPRK and the United States shall jointly endeavor to revise or abolish laws and institutions, which may block improvement in their bilateral relations as early as possible and shall agree to work together to achieve a swift normalization of their relations as well as invigorat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s,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5. China shall support and cooperate in efforts to normalize relations between ROK and DPRK and between DPRK and the United States.

Article 8. Cooperation for Regional Peace

1. The Parties, bearing in mind that the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connected to regional peace, shall begin negotiations for stability and permanent peace in the region by resuming the six-party talks, with the consent of Russia and Japan, within ninety (90) day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shall pledge to jointly endeavor to build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gime in Northeast Asia.

2. The Parties shall agree to include and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Zone in Northeast Asia as an agenda of the six-party security cooperation negotiations in order to sustain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olidify regional stability and peace.
3. The Parties, recognizing that security and the economy are closely related, shall propose, during negotiations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related to railways, energy, environment, industry, and more.
4. The Parties shall agree on DPRK's participation in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mong the ROK, China, and Japan) as a member state.

Article 9. Entry into Force

The Parties shall notify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hen each of their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s been completed.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 day after the final submission of such notification.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명기.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 휴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의 대체를 위하여』. 서울: 국제법출판사, 1994.
- 김상기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이상철. 『한반도 정전체제』.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2.
- 정인섭. 『신국제법 강의: 이론과 사례』. 서울: 박영사, 2018.
- 제성호.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 _____.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 지평서원, 2000.
-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서울: 푸른나무, 2007.
- 통일연구원. 『2019년 한반도 정세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8.
- 평화·통일연구소.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Barash, D and C. We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 London: Sage, 2018.

Dinstein, Yoram.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Von Glahn, Gerhard. *Law among Nations: An Introdu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Macmillan Pub. Co., 1992.

2. 논문

- 박명립.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민주법학』. 제25권, 2004.
- 신우희.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3집 2호, 2012.
- 이근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의 국제법적 함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2호, 2008.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제 18집 2호, 2009.

정태욱.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성격과 정전협정상의 해상불가침 구역.” 『인권과 정의』. vol. 375, 2007.

3. 기타자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통일연구원 <www.kinu.or.kr>.

■ 연구보고서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하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학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자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옥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행법죄에 대한 형사소송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슬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Study Series ■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학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경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경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자속기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Study Series ■

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2018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기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일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진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욱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운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원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 Study Series ■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2019년도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시리즈 ■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	------------------	-------

■ Study Series ■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Park, Juhwa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근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힘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제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힘의	이재영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욱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욱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욱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도경욱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연례정책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2 (2016)</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2 (2017)</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7, No. 1 (2018)</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7, No. 2 (2018)</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8, No. 1 (2019)</i>	10,000원

기 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소 속*	
간행물*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수신거부()			
회원구분*	학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제안하며, 이 제안을 통해 평화협정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www.kinu.or.kr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9 788984 799615
ISBN 978-89-8479-961-5